



보도시점 2025. 6. 16.(월) 12:00 (2025. 6. 17.(화) 조간) 배포 2025. 6. 16.(월) 07:30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 연간 3백 건 이상 CCTV(시시티브이)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 개인정보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3개 행동수칙 마련 ①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②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 ③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 포스터 등 함께 제작해 유관 협단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캠페인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CCTV(시시티브이)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시시티브이) 영상정보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25.6월중)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한국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 **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위원회 소식>정책홍보>정보그림]에서 내려받기 가능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알림소통>알림창구>카드뉴스]에서 내려받기 가능

CCTV(시시티브이)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3년 520건, '24년 342건이다. '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CCTV(시시티브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3년 37.5%(195건)에서 '24년 53.5%(183건)로, CCTV(시시티브이)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2023년도 기타 21건(4%) 사생활 침해 장소설치·운영 24건(5%) 열람 요구불응 195건(38%) 안내판미설치 280건(54%)

< CCTV(시시티브이) 관련 침해신고 현황 >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수칙①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 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수칙② 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 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시시티브이)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 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수직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시시티브이)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CCTV(시시티브이) 행동수칙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분 사례 [붙임2] CCTV(시시티브이) 행동수칙 안내 포스터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해숙 (02-2100-3111)
	조사1과	담당자	조사관	신혜영 (02-2100-3120)
		담당자	조사관	최우석 (02-2100-3113)
<공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팀 장	박대식 (061-820-2830)
	기획조사팀	담당자	책 임	정진우 (061-820-2833)
		담당자	주 임	이수현 (061-820-2839)





붙임1

CCTV(시시티브이) 행동수칙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분 사례

수칙①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 □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탈의,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하여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수칙② 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 □ C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하였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칙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 □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 □ F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되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고객도 포함되어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명확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부과 처분을 받았다.

붙임2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



1 |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수유실 공원,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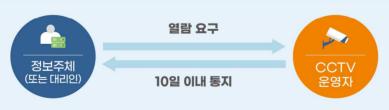
2 |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